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하는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여유분을 사행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 개정(2023.6.20.)에 따른 관련 조문의 문구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2조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 평가 등에 대한 유병률 반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연도별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분과별 위원회 개편(안 제4조 제1항)

사행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감독·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함

다.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주기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 변경

(안 별표)

현재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 시 외국인 카지노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년마다”를 “1년마다 위원회가 정하는 사행산업 이용자의 문제도박 수준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을 “제도·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박 중독 예방·치유·교육”을 “예방·치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독·감시”를 “사행산업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사·연구·홍보”를 “불법사행산업감시”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주기)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0분의 3.5”를 “1만분의 35”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의”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00분”을 각각 “1백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의2제2항”을 “법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14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4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2제4항”을 “법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를 “총량 조정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목 2) 단서 중 “총량”을 “총량(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이하 “업종별 매출총량”이라 한다))”으로, “순매출액”을 “매출총량”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며, 같은 목 4) 중 “결과:”를 “결과(건전화 평가 내용에는 제2조제2항의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행산업 이용자의 문제도박 수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6) 중 “특성”을 “특성이나 경영상황, 감염병 발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카지노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5)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의 세부 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우수 사업자에게는 각 업종별 매출총량의 10% 내에서 매출총량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부여된 매출총량은 차년도 업종별 매출총량을 조정할 때 별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총량기준 등) ① (생 략)	제2조(총량기준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u>2년마다</u>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 <u>1년마다</u> <u>위원회가 정하는 사행산업 이용</u> <u>자의 문제도박 수준을 포함한</u> - -----.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1. <u>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u> 분과위원회	1. <u>제도·정책</u> ----- -----
2. <u>도박 중독 예방·치유·교육</u> 분과위원회	2. <u>예방·치유</u> ----- -----
3. <u>감독·감시</u> 분과위원회	3. <u>사행산업감독</u> -----
4. <u>조사·연구·홍보</u> 분과위원회	4. <u>불법사행산업감시</u>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8조의2(청소년 도박 실태조사</u> <u>주기)</u>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 <u>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도</u> <u>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u> <u>시한다.</u>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만분의 35 -----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
-----.

----- 1백
분-----.

1. -----
----- 1백
분-----

2. -----

----- 1백분 -----

3. -----

----- 1백분 -----

4.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u>100분의 20</u> ③ <u>법 제14조의2제2항</u>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u>법 제14조의2제3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⑤ 위원회는 <u>법 제14조의2제3항</u>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⑥ (생략) 제10조(가산금) <u>법 제14조의2제4항</u>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 ----- -- <u>1백분</u>--- ③ <u>법 제14조의2제3항</u>----- ----- ----- ----- -----. ④ <u>법 제14조의2제4항</u>----- ----- -----. ⑤ ----- <u>법 제14조의2제4항</u>-----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산금) <u>법 제14조의2제6항</u>----- -----. 1. ~ 3. (현행과 같음) <u>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u>
---	---

<u>제16조</u> (생 략)	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연 락 처	(02) 3704 - 0517